2024년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4년 12월 20일 궁능유적본부장

1. 최종 합격자 명단

직종	응시분야	응시번호	성 명
공무직	안전관리원 주간	안전-01	정 () ()

※ 예비합격자 : 안전-11 이○○

2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

- 가. 최종 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종대왕유적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ㅇ 제출기한 : 2024. 12. 26.(목) 17:00까지
 - ㅇ 제출장소 :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층(사무실)
 - ㅇ 제출서류
 - 채용신체검사서(2년 이내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) 1부
 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 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
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[붙임1 서식]
 -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[붙임2 서식]

- 반명함판 사진 1매, 통장 사본 1부, 도장 ※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사본 각 1부

3. 기타사항

- 가. 제출기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「공무원임용령」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며, 합격은 자동적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다음의 경우 합격 통보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ㅇ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발견 시
 - ㅇ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ㅇ 결격사유 확인 시
- 다.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(031-880-4703)로 연락 바랍니다.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 - 2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 끝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 채용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□주민등록 □여권 □외국인등록 □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4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<u>채용이 무효가 된다는</u>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 - 1. 피성년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4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